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

검 토 보 고 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라 도 균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07년 8월 23일
- 제 출 자 : 김성배 의원 외 9인

2. 위원회 회부

- 회부일자 : 2007년 8월 24일
 - 상정일자 : 2007년 9월 3일
- <제1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3. 제정배경

- 국회를 비롯한 대다수 지방의회가 이미 의회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어, 이에 종로구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주관하여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의회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장의절차 및 장의의식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음.

4. 주요골자

-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자 중 유가족이 별도 장의를 행하지 아니할 경우 운영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하도록 함(안 제2조)

- 의회장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의회장의 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의장, 부위원장은 부의장, 의원은 현직 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대표로 함(안 제3조)
- 장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주사가 됨(안 제4조)
- 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조사, 육성녹음 근칭, 헌화 및 분향 등을 행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장 계획에 반영하여 거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 받아 집행함(안 제7조)

5. 검토의견

□ 의회장 제정 필요성

1982년 6월 7일 국회가 “국회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또한 지방의회도 1991년 4월 15일 개원된 이후 대다수 의회가 “의회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직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주관하여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현직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고인에 대한 예우와 의회 위상을 높이고, 장의절차 및 장의의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의회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타 입법례 현황

(2007. 7. 1 현재)

구분	계	국회	광역 의회	기초 의회	법규형식			
					계	조례	규칙	규정
합계	36	1	6	29	36	8	4	24

□ 장의비용 예산 반영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계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의회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겠으나, 그 소요비용을 매년 예산

에 편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또한 집행이 불확정함으로 예산을 불용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안 제7조와 같이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종로구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 받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법규형식상의 명칭 적합성

2007년 7월 1일 현재 타 입법례의 현황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규형식상의 명칭을 보면, 조례 형식은 8개, 규칙 형식은 4개, 규정 형식은 24개로 서로 다르게 명칭을 사용하여 제정되었음을 볼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모든 법규는 내용과 형식에 있어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그 내용·규정 형식이 다른 법규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지방자치법 규정의 입법취지·내용·절차에도 적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상 조례는 법인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결 및 단체장의 공포를 절차상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비추어 볼 때 의회내부 사항에 가까운 “의회장”에 관하여 조례 형식이나 규칙 형식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며, 의회내부 자율권에 근거하여 “의회장”에 관하여 본 규정(안)과 같이 규정 형식으로 명칭을 사용하려는 것은 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과 의회규칙과의 혼돈방지 및 주민의 인식편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전직 의원 의회장 대상자 여부

전직 의원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현직 의장이 주관하여 의회장을 치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회장 장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또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상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은 대법원에서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판례가 있으며, 아울러 의회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회를 비롯한 타 의회(광역의회 6, 기초의회 29)가 현직 의원만을 의회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안 제2조와 같이 전직 의원을 제외하고 현직 의원만을 의회장 대상자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6. 관련 법령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건전가정의례 준칙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타 입법례 현황

2007. 7. 1 현재

연번	기관명	형식	명 칭
1	국 회	규정	국회장에 관한 규정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
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
4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규정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
5	인천광역시 의회	규정	인천광역시 의회장에 관한 규정
6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규정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
7	광주광역시 의회	규정	광주광역시 의회장에 관한 규정
8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장에 관한 규정
9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규정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장에 관한 규정
10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규정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장에 관한 규정
1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장에 관한 규정
12	경기도 안양시의회	규칙	경기도 안양시 의회장에 관한 규정
13	경기도 의왕시의회	조례	경기도 의왕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
14	경기도 성남시의회	조례	경기도 성남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
15	강원도 의회	규칙	강원도 의회장에 관한 규칙
16	강원도 횡성군의회	규정	강원도 횡성군 의회장에 관한 규정
17	강원도 영월군의회	규정	강원도 영월군 의회장에 관한 규정
18	강원도 정선군의회	조례	강원도 정선군 의회장에 관한 조례
19	강원도 고성군의회	조례	강원도 고성군 의회장에 관한 조례
20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의회장에 관한 규칙

연번	기관명	형식	명 칭
21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규정	충청북도 청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정
22	충청남도 의회	규정	충청남도 의회장에 관한 규정
23	충청남도 논산시의회	규정	충청남도 논산시 의회장에 관한 규정
24	충청남도 홍성군의회	규정	충청남도 홍성군 의회장에 관한 규정
25	전라북도 의회	규정	전라북도 의회장에 관한 규정
26	전라남도 의회	규정	전라남도 의회장에 관한 규정
27	전라남도 광양시의회	규정	전라남도 광양시 의회장에 관한 규정
28	전라남도 곡성군의회	규정	전라남도 곡성군 의회장에 관한 규정
29	전라남도 장흥군의회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의회장에 관한 규칙
30	전라남도 신안군의회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의회장에 관한 조례
31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규정	전라남도 보성군 의회장에 관한 규정
32	경상북도 포항시의회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
33	경상북도 경주시의회	규정	경상북도 경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정
34	경상북도 김천시의회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
35	경상북도 상주시의회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
36	경상북도 칠곡군의회	규정	경상북도 칠곡군 의회장에 관한 규정

○ 건전가정의례준칙

제9조(상례) 사망후 매장완료 또는 화장완료시까지 행하는 예식은 발인제와 위령제를 행하되, 그 외의 노제·반우제 및 삼우제의 예식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발인제) ①발인제는 영구가 상가 또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 또는 장례식장에서 행한다.

②발인제의 식장에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향로 및 향합과 기타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한다.

제11조 (위령제) 위령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매장의 경우 : 성분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를 차려놓고 분향·헌주·축문읽기 및 배례의 순으로 행한다.

2. 화장의 경우 :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을 모시고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로 행한다.

제12조 (장일) 장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제13조 (상기) ①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기타의 자의 상기는 장일까지로 한다.

②상기중 신위를 모셔두는 궤연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에 준하여 행한다.

제14조 (상복등) ①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에는 백색 복장, 양복일 경우에는 흑색 복장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②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시까지로 한다.

제15조 (상제) ①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가 된다.

②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

③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제16조 (부고) 신문에 부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운구) 운구의 행렬순서는 명정·영정·영구·상제 및 조객의 순으로 하되, 상여로 할 경우 과도한 장식을 하지 아니한다.

제18조(발인제의 식순 등) 발인제의 식순 및 상장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